

(시)도정치어업면허 제 호				어업경영확인증				어업권자 성명 인																
1. 어업권의 표시	어업권자의 주소 성명	도 군 면 리		어장의 수지 및 손익관계	구분	수 입 지 출				손익금	비고(당해년도의 어업경영 개요)													
	어 장 의 위 치	도 군 면 리 지선				채포물	어획량	금액	종별			수량	금액											
	어업의종류 및 어구명칭	정치어업 망					kg	원	어 선 유 류				원											
	어 업 의 시 기	자 월 일 지 월 일 개월							어 구 비															
	채 포 물 의 종 류								급 식 비															
	어업권의 존속기간	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간							인 건 비															
	제한 또는 조건								판매수수료															
2. 휴업	신 고 연 월 일	년 월 일		어장의 수지 및 손익관계	년				제세공과금															
	휴 업 기 간	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월간							어 막 기 타															
	휴 업 의 사 유					계																		
3. 저당관계	저 당 연 월 일	년 월 일		어장의 수지 및 손익관계	一九년				어 선 유 류															
	저 당 권 자								어 구 비															
	저 당 금 액	원							급 식 비															
	상 황 연 월 일	1차 연월일	2차 연월일			3차 연월일			인 건 비															
	상 환 액	원	원			원			판매수수료															
	상 환 잔 액	원							제세공과금															
4 어장의 시설 규모	(소계 원)	어 선	망 선	척	톤	평가	원	一九년				어 선 유 류			어 선 유 류			어 선 유 류						
		중 선					원						어 구 비				어 구 비							
		운반선					원						급 식 비				급 식 비							
	(소계 원)	어 구	망 류	수량		금액	원	년				어 선 유 류			一九년						어 선 유 류			
			망 류	"		"	"					어 구 비				어 구 비								
			부자류	"		"	"					급 식 비				급 식 비								
			친자류	"		"	"					인 건 비				인 건 비								
			기 타	"		"	"					판매수수료				판매수수료								
	(소계 원)	어 막	어 막	동		건평	가격	원	평균							계						제세공과금		
			창 고	"		"	"					어 막 기 타			어 막 기 타									
			비품중	"		"	"																	
			연망장	"		"	"																	
	시설에 대한 총액	원				어업권 평가	어업권자		인	어업권보상금사정표		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구분	종별		시설비	어획량	평가액	부가가치	보 상 산정액	인									
당해어협확인								보상금심사위원회				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
시군확인												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
공부상 확인	어업권부대조필		인	결정액	기본금 원		누진금 원		보상금 원															
	어장 도철임장 대조		인	심사의견																				
	어장 기본조사 대조		인																					
	어업권저당관계확인		인																					

기재요령 1. 이 표 중 어종별 단가는 수산청발행 수산통계년보지방별 산출단가에 의한다.

수산서식 1-11

2. 제4조제3항의 부가가치는 작년도 어업실적을 참작하여 기준년도(수산청장이 정하는 년도 이하 같다) 1년분의 부가가치를 산출한 액으로 한다.

3. 기준년도의 수량 및 금액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는 그 원인에 대한 증감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한다. 확인기간은 수입에 있어서는 영업세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수입액에 의하여 지출에 있어서는 영업세법 제4조,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별로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한다.